

日本で生活するときには、各種の行政手続き(住民登録、出生届、婚姻届、離婚届、死亡届、印鑑登録、国民健康保険、税金など)が必要になります。これらは、主に居住している市区町村役所で受け付けています。これらの手続きをすると各種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住居地の(変更)届出

住居地の届出をすると、日本人と同様に、外国人住民の方についても住民票が作成されます。

・新たに来日された方
出入国港において在留カードが交付された方(注)は、住居地を定めてから14日以内に、在留カードを持参の上、市区町村役所の窓口でその住居地を届け出てください。
(注)パスポートに「在留カードを後日交付する」旨の記載がなされた方は、パスポートを持参してください。

・引越しをされた方
中長期在留者の方が、住居地を変更した時は、移転した日から14日以内に、在留カードを持参の上、移転先の市区町村役所の窓口でその住居地を届け出てください。

■マイナンバー制度

住民票のある外国人(中長期滞在者、特別永住者等)には、日本人と同様にマイナンバーと呼ばれる12桁の個人番号が市町村から通知されます。この個人番号は、社会保障や税、災害安否等に活用されます。

(マイナンバー制度について)

<https://www.kojinbango-card.go.jp>

■結婚をしたとき《婚姻届》

日本で結婚する場合、日本人配偶者は戸籍謄本を、外国人は下記の書類(提出書類が外国語の場合は、日本語の訳文も必要となります)を持って、居住地の市区町村役所に婚姻の届出をします。

日本에서 생활할 때는 각종 행정수속(주민등록,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인감등록, 국민건강보험, 세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시구청촌)의 행정관서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속을 하면 각종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 (변경) 신고

주거지 신고를 하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새롭게 일본에 오신 분

출입국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받으신 분(주)은 주거지를 정한 후 14 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시구청촌의 행정관서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해 주십시오.

(주) 여권에 '체류카드를 후일 교부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이사를 하신 분

중장기 체류자가 주거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이전한 곳의 시구청촌 행정관서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해 주십시오.

■마이넘버 제도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중장기간, 체류자, 특별영주자 등)에게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마이넘버라고 불리는 12자리의 개인번호가 시정촌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이 개인번호는 사회보장이나 세금, 재해 안부 등에 활용됩니다.

(마이넘버 제도에 대해)

<https://www.kojinbango-card.go.jp>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

일본에서 결혼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는 호적등본을, 외국인은 하기의 서류(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를 지참하여 거주지의 시구청촌 행정관서에 혼인신고를 제출합니다.

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

自国の大使館又は領事館へ届出が必要な場合は、市区町村役所で婚姻届受理証明書をもって、届出をします。在留手続きや住民登録について変更がある場合は、それらの手続きも必要となります。詳しいことは、市区町村役所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必要書類

①婚姻届出書

(市区町村役所に置いてあります。)

②婚姻要件具備証明書(結婚する相手が独身であり、自国の法律で結婚できる条件を備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自国政府が証明した公的文書のことです。自国に戸籍制度がある場合には戸籍謄本がこれに当たります。)

- ・日本にある大使館又は領事館が発行してもらいます。
- ・日本語以外の言葉で書かれている場合には、翻訳者名を付けた日本語訳が必要です。

③パスポート

必要書類については、市区町村役所に確認してください。

■離婚をしたとき《離婚届》

夫婦のどちらかは日本人の場合、夫婦ともに同意すれば、離婚することができます。下記の書類を持って、居住地の市区町村役所に離婚の届出をしてください。

夫婦双方が外国人の離婚については、居住条件によって届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ので、詳しいことはそれぞれの大使館又は領事館と、居住地の市区町村役所で確認してください。

◇必要書類

①離婚届出書

②日本人配偶者の戸籍謄本

③日本人配偶者の住民票

④パスポート

必要書類については、市区町村役所に確認してください。

경우는 시구정촌의 행정관서에서 혼인신고 접수증명서를 발급받고 신고합니다. 체류수속이나 주민등록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이들에 관한 수속도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 행정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①혼인신고서(시구정촌의 행정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혼인요건 구비증명서(결혼할 상대방이 독신이며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자국 정부가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자국에 호적제도가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본에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도록 합니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번역자 이름이 기재된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③여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시구정촌 행정관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혼을 했을 때《이혼신고》

부부의 어느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기의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의 시구정촌 행정관서에서 이혼신고를 하십시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거주조건에 따라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각각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거주지의 시구정촌 행정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서류

①이혼신고서

②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③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

④여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시구정촌 행정관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 妊娠したとき《母子健康手帳》

妊娠したとき、市区町村役所に届出をすると「母子健康手帳」が交付されます。妊娠から生まれた子どもの予防接種、健康診査などを記録します。(→ P33) 詳しいことは、市区町村役所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 子どもが生まれたとき《出生届》

◇国籍

両親のどちらかが日本人で法的結婚をしている場合は、日本国籍が取れます。同時に、子どもが日本以外の国籍も取る場合は、22才までにどちらかの国籍を選びます。

両親とも外国籍の場合は、日本で生まれても日本国籍を取ることができません。両親の国の法律に従って国籍を取ります。

◇出生の手続き

①子どもが生まれてから 14 日以内に出生地の市区町村役所の住民課に出生届を提出します。届出書は、市区町村役所にもありますが、通常、出産した病院で渡される出生証明書と一体になっています。

・母子健康手帳の出生届出済証明の記載、乳幼児の医療費の助成、児童手当、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人は出産一時金の申請や子どもの加入の手続きなども市区町村役所で併せて行います。

②自国の在日大使館又は領事館に出生届を提出し、子どものパスポートを受け取ります。

③日本で出生し、60日以上在留する場合は、出生から 30 日以内に居住地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に在留資格の取得許可申請が必要。(→P24 出生による在留資格の取得参照)

■ 子どもを養育するとき《児童手当》

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人は、中学校を卒業するまでの子ども 1 人につき、月額 1 万円(3 歳未満と第 3 子

■ 임신했을 때《모자건강수첩》

임신했을 때 시구청촌 사무소에 신청하면 「모자 건강수첩」을 교부합니다. 임신부터 태어난 아이의 예방접종, 건강 검진 등을 기록합니다. (→ P33) 상세한 내용은 시구청촌 행정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 아이가 태어났을 때《출생신고》

◇국적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인이고 법적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가 일본 이외의 국적도 취득하는 경우에는 22 세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일본에서 태어나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모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신고

①아이가 태어나고 14 일 이내에 출생지의 시구청촌 행정관서의 주민과에 출생신고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는 시구청촌의 행정관서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출산한 병원에서 받는 출생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자건강수첩의 출생신고 접수필 증명,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의 출산일시금 신청과 아이의 가입수속 등도 시구청촌의 행정관서에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②자국의 주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제출하여 아이의 여권을 취득합니다.

③일본에서 출생한 날부터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의 지방 입국 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취득 허가를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P24 출생으로 인한 자격 취득 참조)

■ 아이를 양육할 때《어린이 수당》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어린이 1명에 대해 월액 1만엔(3 세 미만과 제 3 자 이후의 초등 학생까지는 1 만 5 천엔)의 어린이 수당을

以降いこうの小学生しょうがくせいまでは1万5千円まん せんえんの子ども手当こども てあてが
受給じゅきゅうできます。

受給じゅきゅうするには、お住まいの市区町村お す ま い し く ちやうそん しんせいへの申請しんせい
必要ひつようです。詳しいことは、市区町村役所し く ちやうそん や く し ょに問い合わ
せてください。

■ 亡なくなったとき《死亡届しぼうとどけ》

死亡しぼうしたときは、7日以内か い ないに医師い しまたは検死官けんし かんの
死亡診断書しぼうしんだんしょを持って居住地きょじゅうちの市区町村役所し く ちやうそん や く し ょに
届出とどけをします。死亡届書しぼうとどけしょは通常つうじょう、死亡診断書しぼうしんだんしょ・
死体検案書したいきんあんしょと一体いつたいとなっています。また、自国じこくの
大使館たいしかんまたは領事館りやうじかんにも届出とどけをします。

亡なくなった人の外国人登録証明書がいこくじんとうろくしょうめいしょ、在留カードざいりゅうカードは
出入国在留管理局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よく へんかんへ返還へんかんします。

■ 自動車じどうしゃ、土地とち、家いえを買かったり、 権利けんりに係かかわる契約けいやくをするとき 《印鑑登録いんかんとうろく》

日本にほんでは、サインと同じような意味おなで、自分の名前い みが
刻印こくいんしてある印鑑いんかん（“ハンコ”とも言われています）を
使つかいます。居住地きょじゅうちの市区町村役所し く ちやうそん や く し ょに申請しんせいし登録とうろく
した印鑑いんかんを「実印じついん」と言い、印鑑登録いんかんとうろくをすると、「印鑑
登録証とうろくしょう（カード）」が発行はつこうされます。

自動車じどうしゃの登録とうろく、不動産売買ふどうさんばいばいや商取引しょうとりひきなど権利けんりにか
かわる契約けいやくをするときに、実印じついんや印鑑登録証明書いんかんとうろくしょうめいしょが
必要ひつようとなります。印鑑登録証明書いんかんとうろくしょうめいしょは、市区町村役所
で印鑑登録証いんかんとうろくしょうを提示ていじし、印鑑登録証明書交付申請書いんかんとうろくしょうふ かいふしんせい
書を記載きざいして申請しんせいします。

■ 在留ざいりゅうの手続きてつづき

日本にほんに在留ざいりゅうするときには、出入国在留管理局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よくで
てつづき、ひつよう
手続きてつづきが必要ひつようです。

出入国在留管理局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よくでは、日本にほんにおいて活動かつどうできる
範囲はんい（「在留資格ざいりゅうしかく」といいます）と滞在たいざいできる期間きかん
（「在留期間ざいりゅうきかん」といいます）が記載きざいされた
上陸許可証印じょうりくきょしょういんをパスポートに押印おうえんします。

在留資格以外ざいりゅうしかく以外の活動かつどうをするときや、在留期間ざいりゅうきかんを過ぎ
て滞在たいざいするときも、入国管理局にゅうこくかんりきよくで手続きてつづします。これ
らの手続きてつづをしないと、処罰しよばつされたり強制退去きやうせいたいきょさせら
れることがあります。

手配てはいする ことができます。

手配てはい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시구청촌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구청촌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 사망했을 때《사망신고》

사망했을 때는 7 일 이내에 의사 또는 검시관의
사망진단서를 지참하여 거주지의 시구청촌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도 신고합니다.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명서, 체류카드는 입국관리국에
반납합니다.

■ 자동차, 토지, 집을 사거나, 권리와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인감등록》

일본에서는 서명과 같은 의미로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이라고도 합니다)을 사용합니다. 거주지의
시구청촌 행정관서에 신청하여 등록한 인감을
「지프인(실인)」이라고 하며, 인감등록을 하면
「인감등록증(카드)」이 발급됩니다.

자동차의 등록, 부동산 매매나 상거래 등 권리와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에 실인과 인감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증명서는 시구청촌의
행정관서에서 인감등록증을 제시하고 인감등록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체류수속

일본에 체류할 때는 입국관리국에서 수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체류자격」이라고 말합니다)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라고 말합니다)이 기재된
상륙허가증의 도장을 여권에 날인합니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나, 체류기간을
지나서 체류할 때도 입국관리국에서 수속을 합니다.
이들 수속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체류 자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지방 입국 관리국(P23)

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しかく について 詳しいことは、出入国在留
管理局(P23)、または下記、「外国人在留総合イン
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外国人在留支援センター (F R E S C)

外国人の在留を支援する複数の関係機関が入居
しています。

平日 午前 9:00 - 午後 5:00

東京都新宿区四谷 四谷タワー13階

TEL 0570-011000

TEL 03-5363-3013 (IP, 海外)

英語、中国語、韓国語、ポルトガル語、スペイン語、
タガログ語、ベトナム語、タイ語、インドネシア語、ネ
パール語

〔センター内の行政機関〕

出入国在留管理庁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東京法務局人権擁護部

法テラス

東京労働局外国人特別相談・支援室

東京外国人雇用サービスセンター

外務省ビザ・インフォメーション

日本貿易振興機構 (ジェトロ)

◇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平日 8:30am-5:15pm)

東京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内

TEL 0570-013904

TEL 03-5796-7112 (IP, 海外)

e-mail: info-tokyo@i-moj.go.jp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四谷分庁舎

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や、外国人を雇用したい
企業関係者等へ、予約制による個別相談を行っ
ています。

在留相談

予約専用電話: 03-5363-3025

(18言語に対応)

또는 아래의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
십시오.

◇외국인 재류 지원 센터 (F R E S C)

외국인 재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평일 9:00 am-5:00 pm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 요쓰야 타워 13 층

TEL 0570-011000

TEL 03-5363-3013 (IP·해외)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센터내의 행정기관〕

출입국 재류관리청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도쿄 법무국 인권옹호부

호테라스 (일본사법지원센터)

도쿄 노동국 외국인 특별 상담/지원실

도쿄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외무성 비자 인포메이션

일본 무역 진흥기구 (JETRO)

◇ 외국人体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8:30am-5:15pm)

도쿄 우편번호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 입국관리국 내

TEL 0570-013904

TEL 03-5796-7112 (IP, 해외)

e-mail: info-tokyo@i-moj.go.jp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요쓰야 분청사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개별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류상담

예약전용전화 : 03-5363-3025

(18개 언어로 지원)

予約専用フォーム:
日本語

<https://www12.webcas.net/form/pub/fresc/yoyaku-jpn>

英語

<https://www12.webcas.net/form/pub/fresc/yoyaku-eng>

住所: 東京都新宿区四谷1-6-1四谷タワー13階

月~金 午前9:00~午後5:00

英語、中国語、韓国語、ベトナム語、ネパール語、インドネシア語、タガログ語、タイ語、ポルトガル語、スペイン語

◇外国人総合相談支援センター

新宿 〒160-0021

東京都新宿区歌舞伎町2-44-1

東京都健康センター「ハイジア」11階

しんじゅく多文化共生プラザ内

TEL 03-3202-5535

英語、中国語 月~金 (第2, 第4水曜日を除く)

ポルトガル語、スペイン語 月・火・水

タガログ語 金

インドネシア語 火

ベトナム語 月・水

예약전용품 :

일본어

<https://www12.webcas.net/form/pub/fresc/yoyaku-jpn>

영어

<https://www12.webcas.net/form/pub/fresc/yoyaku-eng>

주소 :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 1-6-1 요쓰야 타워 13 층

월~금 오전 9:00~오후 5: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덜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외국인 종합상담 지원센터

신주쿠 우편번호 160-0021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2-44-1

도쿄도 건강센터「하이지아」11 층 신주쿠 다문화공생 플라자내

TEL 03-3202-5535

영어, 중국어 월~금(제2, 제4수요일 제외)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월·화·수

타갈로그어 금

인도네시아어 화

베트남어 월·수

ざいりゅうしかく しゅるい ざいりゅうきかん
在留資格の種類と在留期間

체류자격의 종류와 체류기간

A. かつどう ちやくむく ぶんるい ざいりゅうしかく
活動に着目して分類された在留資格

활동에 의거한 체류자격

1. 就労が認められる在留資格
しゅうろう みと ざいりゅうしかく

각 체류자격에 정해진 범위에서의 취로가 가능한 체류자격

在留資格 체류자격	在留期間 체류기간
がいこう 외교	외교활동을 행하는 기간
こうよう 공용	5년, 3년, 1년, 3개월, 30일 또는 15일
きょうじゅ 교수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げいじゆつ 예술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しゅうきょう 종교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ほうどう 보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こうど せんもんしやく 고도 전문직	5년 또는 무기한
けいえい かんり 経営・管理 투자·경영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 4개월, 3개월
ほうりつ かいけいぎょうむ 法律・会計業務 법률·회계업무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いりょう 의료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けんきゅう 연구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きょういく 교육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ぎじゆつ じんぶん ちしき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きぎょうないてんきん 企業内転勤 기업내 전근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かいご 介護 개호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こうぎょう 興業 흥행	5년, 3년, 1년, 3개월 또는 15일
ぎのう 技能 기능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ぎのうじつしゅう 技能実習 기능실습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とくていぎのう 特定技能 특정 기능	1호: 1년, 6개월 또는 4개월 2호: 3년, 1년 또는 6개월

2. 就労が認められない在留資格
しゅうろう みと ざいりゅうしかく

취로가 불가능한 체류자격

在留資格 체류자격	在留期間 체류기간
ぶんかかっどう 文化活動 문화활동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りゅうがく 留学 유학	4년과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けんしゅう 研修 연수	1년, 6개월 또는 3개월
단기체재 短期滞在 단기체재	90일, 30일 또는 15일
가족체재 家族滞在 가족 체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3. 就労の可否は指定される活動による在留資格

개개인의 외국인에 주어진 허가내용에 따라 취로의 여부가 정해지는 체류자격

在留資格 체류자격	在留期間 체류기간
特定活動 特定활동	5 년, 3 년, 1 년, 6 개월, 3 개월 또는 5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개별적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B. 身分や地位に着目して分類された在留資格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한 체류자격

在留資格 체류자격	在留期間 체류기간
永住者 영주자	무기한
日本人の配偶者等 일본인의 배우자 등	5 년, 3 년, 1 년 또는 6 개월
永住者の配偶者等 영주자의 배우자 등	5 년, 3 년, 1 년 또는 6 개월
定住者 정주자	5 년, 3 년, 1 년, 6 개월 또는 5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2) 出入国在留管理局

◇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東京都港区港南5-5-30

電話: 0570-034259

03-5796-7234 (IP・海外)

行き方: JR品川駅東口から⑧番乗り場「品川埠頭循環」または「東京入国管理局折り返し」で「東京入国管理局前」下車

東京モノレール又はりんかい線(埼京線乗り入れ)「天王洲アイル駅」徒歩15分

受付時間: 月～金=午前9:00～午後4:00

(2) 입국관리국

◇ 도쿄 입국관리국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전화: 0570-034259

03-5796-7234 (IP・해외)

교통편: JR 시나가와역 동쪽 출입구 ⑧번 승차장에서「시나가와부두 순환」또는「도쿄 입국관리국 왕복」버스 「도쿄 입국관리국 앞」에서 하차

도쿄 모노레일 또는 린카이선(사이쿄선 직통)

「덴노즈아이루역」에서 도보 15 분

접수시간: 월~금=오전 9:00~오후 4:00

◇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千葉出張所

千葉市中央区千葉港2-1

千葉中央コミュニティーセンター内

電話: 043-242-6597

行き方: JR総武線千葉駅で乗り換え、千葉都市モノレール「市役所前」徒歩2分、JR京葉線「千葉みなと」駅徒歩10分

受付時間: 月～金 午前9:00～午後4:00

◇ 도쿄 입국관리국 지바 출장소

지바시 추오구 지바미나토 2-1

지바추오 커뮤니티센터 내

전화: 043-242-6597

교통편: JR 소부선 지바역에서 환승, 지바 도시모노레일 「시청앞」에서 도보 2 분, JR 게이요선 「지바미나토」역에서 도보 10 분

접수시간: 월~금 오전 9:00~오후 4:00

(3) 在留期間の更新

在留期間を延長したい場合は、在留期間が満了する前に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で更新の申請をします。6か月以上の在留期間を有する場合は、在留期間の満了するおおむね3か月前から受け付けています。

〔必要書類〕

- ①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 ② 活動内容ごとに法務省令で定める資料
 - ③ パスポート又は在留資格証明書
 - ④ 在留カード又は在留カードとみなされる外国人登録証明書
- 手数料: 4,000円(収入印紙で納付)

(4) 在留資格の変更

現在取得している在留資格の活動を中止して、別の在留資格に当てはまる活動を行うおとす場合、在留資格変更の手続きが必要です。

〔必要書類〕

- ①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 ② 活動内容ごとに法務省令で定める資料
 - ③ パスポート又は在留資格証明書
 - ④ 在留カード又は在留カードとみなされる外国人登録証明書
- 手数料: 4,000円(収入印紙で納付)

(5) 出生による在留資格の取得

日本で出生し60日以上在留する場合は、出生から30日以内に両親が近親者が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管理官署に在留資格の取得許可の申請をします。

在留資格の取得許可の申請をする前に、市区町村役所へ出生届を提出するとともに、自国の在日公館に出生届を提出しパスポートの発給を受けることが必要になります。

〔必要書類〕

- ①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 ② 出生したことを証する書類
- ※提出資料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られている資料以外にも提出を求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詳しくは、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または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手数料: なし

(3) 체류기간 갱신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 갱신신청을 합니다. 6 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체류기간 만료 약 3 개월전부터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

- ①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 ② 활동 내용별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③ 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
- ④ 체류카드 또는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수수료: 4,000 엔(수입인지로 납부)

(4) 체류자격 변경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수속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 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② 활동내용별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③ 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
- ④ 체류카드 또는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수수료: 4,000 엔(수입인지로 납부)

(5) 출생에 의한 체류자격 취득

일본에서 출생하여 60 일 이상 체류할 경우는 출생일부터 30 일 이내에 부모 또는 근친자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체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합니다.

체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구청촌의 행정관서에 출생신고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국의 주일공관에 출생신고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① 체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
 - ② 출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법무성령으로 정해져 있는 자료 이외에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지방입국관리관서 또는 외국인체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수료: 무료

(6) 資格外活動許可

現在取得している在留資格以外の活動で収入・報酬がある活動をする場合は、事前に許可が必要です。例えば留学生がアルバイトを行う場合など。

[必要書類]

- ① 資格外活動許可申請書
- ② 資格外活動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類
- ③ パスポート又は在留資格証明書
- ④ 在留カード又は在留カードとみなされる外国人登録証明書
手数料: なし

(7) 再入国許可

許可されている在留期間内に、一時的に日本を出国し再び日本に入国する場合は、再入国許可を得ておくと、改めてビザを取る必要はありません。再入国許可を得て出国し、その有効期間内に日本へ戻れば外国人の新規登録の必要はありません。再入国許可は、一回限り有効なものと、何回でも使用できる数次許可のものがあります。

[必要書類]

- ① 再入国許可申請書
- ② パスポート
- ③ 在留カード、在留カードとみなされる外国人登録証明書、特別永住者証明書又は特別永住者証明書とみなされる外国人登録証明書

手数料: 1 回限り有効 3,000 円 (収入印紙で納付)、数次有効 6,000 円 (収入印紙で納付)

● みなし再入国許可

有効なパスポート及び在留カードを所持する外国人の方が出国する際、出国後 1 年以内に日本国内での活動を継続するために再入国をする場合は、原則として通常の再入国許可の取得を不要とするものです。(出国する際に、必ず在留カードを提示してください。)

詳しくは、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 または 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6) 자격외 활동 허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통해 수입·보수를 얻으려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등.

[필요한 서류]

- ①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 ② 자격외 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여권 또는 체류자격증명서
- ④ 체류카드 또는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수수료: 무료

(7) 재입국허가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고 다시 일본에 입국할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 두면 다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유효기간내에 다시 일본에 돌아오면 외국인의 신규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는, 1 회만 유효한 것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수차허가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① 재입국허가 신청서
- ② 여권
- ③ 체류카드 또는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수수료: 1 회만 유효 3,000 엔(수입인지로 납부),

수차유효 6,000 엔(수입인지로 납부)

●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여 출국 후 1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재입국허가 취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국할 때 반드시 체류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입국관리관서 또는 외국인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8) 영주허가

영주허가의 신청은, 通常의 在留資格의 変更よりも 慎重に 審査されます。

[必要条件]

- ①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 ②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 ③ 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致すると認められること

(注) 日本人, 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の場合は, ①及び②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ません。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の場合には②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ません。

*必要書類につきましては, 申請人の在留資格によって異なりますので, 出入国在留管理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http://www.immi->

[moj.go.jp/english/tetuduki/kanri/shyorui/05.html](http://www.immi-moj.go.jp/english/tetuduki/kanri/shyorui/05.html)

手数料: 8,000円 (収入印紙で納付)

(8) 영주허가

영주허가 신청은 일반적 체류자격 변경보다 신중하게 심사됩니다.

[필요한 조건]

- ① 소행이 선량할 것
- ② 독립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의 자산 또는 기술을 소지하고 있을 것
- ③ 본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부합됨을 인정받을 것

(주)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혹은 아이의 경우는 ① 및 ②에 해당되지 않아도 됩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②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http://www.immi->

[moj.go.jp/english/tetuduki/kanri/shyorui/05.html](http://www.immi-moj.go.jp/english/tetuduki/kanri/shyorui/05.html)

수수료: 8,000 엔(수입인지로 납부)

■ 세금

日本に住む人は, 国籍にかかわらず, 日本法律に従って税金を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税金は, 主なものとして, 所得税(国に支払う), 住民税(県や市町村に支払う), 消費税(買物やサービスに係る税), 自動車税(自動車を所有している場合に支払う)があります。

◇ 相談窓口**① 所得税と消費税:**

最寄りの税務署又は東京国税局税務相談室

英語での相談: 03-3821-9070

月~金 (祝日を除く)

午前 9:00 ~ 午前 12:00

午後 1:00 ~ 午後 5:00

国税庁のホームページ(英語)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

② 住民税と軽自動車税: 居住地の市区町村役所**③ 自動車税: 千葉県自動車税事務所 千葉市中央区問屋町1-11 電話 043-243-2721****■ 세금**

일본에 사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여 일본의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금은, 주요한 것으로서 소득세(국가에 납부), 주민세(현이나 시정촌에 납부), 소비세(물건 구입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 자동차세(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 납부) 등이 있습니다.

◇ 상담창구**① 소득세와 소비세:**

가장 가까운 세무서 또는 도쿄 국세국 세무상담실

영어에 의한 상담: 03-3821-9070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9:00 ~ 오전 12:00

오후 1:00 ~ 오후 5:00

국세청의 홈페이지(영어)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

② 주민세와 경자동차세: 거주지의 시구정촌 행정관서**③ 자동차세: 지바현 자동차세사무소 지바시 추오구 동야초 1-11 전화 043-243-2721**

(1) 所得税

1月1日から12月31日までの間に得た所得に対して国が課す税金です。

◇収入が給与のみの場合(給与所得者):

通常、雇用主が手続きします。

①毎月の給与や賞与から源泉徴収(給与天引き)されます。

②年末調整で所得税が精算されます。

*年末に、保険料や扶養家族の異動等による給与所得を精算し、「源泉徴収票」が翌年1月末までに雇用主から交付されます。源泉徴収票は、税金をおさめたことを証明する書類で、在留資格の更新等で必要になりますので大切に保管してください。

◇給与以外の収入がある場合(自営業や勤務先で源泉徴収されていない場合、2か所以上から収入がある場合など):

自分で税務署に確定申告をします。毎年3月15日までに、前年の1月から12月までのすべての収入や経費などを税務署に申告し、所得税をおさめます。

◇所得税の還付

次の場合に確定申告をすると、所得税の還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際には、医療費の領収書などの証拠書類が必要です。

①前年中に支払った医療費から健康保険や生命保険で補てんされた金額を差し引いた金額が、100,000円又は所得金額の5%のいずれか低い額を超える場合

②自然災害や盗難による被害を受けた場合

③ローンによる住宅を購入した場合

課税範囲や税率は、住所の有無や日本での居住期間によって非永住者以外の居住者・非永住者・非居住者に区分され、それぞれ異なります。

(1) 소득세(Shotoku-zei)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얻은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이 급여만인 경우(급여소득자):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수속을 합니다.

①매월의 급여나 상여금에서 원천징수(급여에서 공제)됩니다.

②연말조정으로 소득세가 정산됩니다.

*연말에 보험료나 부양가족의 이동 등에 따라

급여소득을 정산하고,「원천징수표」가 다음해

1월말까지 고용주로부터 교부됩니다. 원천징수표는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체류자격 갱신 등 수속에서 필요하게 되므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급여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 (자영업이나 근무처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2 곳 이상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등):

자기 스스로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수입과 경비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의 환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의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의료비의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전년중에 지불한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을 뺀 금액이 100,000 엔 또는 소득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자연재해나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③론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과세범위나 세율은 주소의 유무나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영주자·비영주자·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区分	구분	所得税の課税範囲 소득세의 과세범위
居住者 거주자	永住者 영주자	全ての所得 모든 소득
거주자	非永住者 비영주자	国内の所得(国内源泉所得)の全てと国外の所得(国外源泉所得)のうち 国内で支払われたもの及び国内に送金されたもの 国内에서 얻은 소득(국내 원천소득), 국외의 소득(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불된 소득, 국외에서 송금된 소득
非居住者 비거주자	在留期間が1年未満の個人 1년 미만 체류할 사람	国内において行う勤務等に起因するもの(国内源泉所得) 国内에서 얻은 소득(국내 원천소득)

(2)住民税

1月1日現在住んでいる各市町村役所が市町村民税と県民税と一緒に徴収します。税務署に提出されている確定申告書などに基づき、前年中の所得を基準に計算した金額と定額で負担する金額の合計が徴収されます。

給与所得者は、この税金を6月から翌年の5月までの毎月の給与から直接差し引かれます。

自営業者は、6月に各市町村役所から送付される納税通知書により、6月、8月、10月、1月の4回に分けて納付します(時期は市町村により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外国税額控除について

外国において生じた所得で、その国の所得税や住民税に相当する税金を課税された場合には、一定の方法により計算された金額が控除されます。

◇租税条約による特例について

日本は、二重課税を避けるため各国と租税条約を締結しています。条約締結国の国籍を有し、かつ非居住者に該当する人で、租税条約上、大学生等の「学生」や国内の滞在期間が「短期」であるなど一定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を税務署及び市町村役所に提出することにより所得税や住民税の特例の適用が受け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3)消費税

事業を行っている人から購入した物品とサービスの提供に対して10%の税金がかかります。

(2)주민세 (Jumin-zei)

1월 1일 현재로 살고 있는 각 시정촌 행정관서가 시정촌민세와 현민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확정신고서 등에 근거하여 전년중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정액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이 세금이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매월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자영업자는 6월에 각 시정촌 행정관서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에 의해 6월, 8월, 10월, 1월의 4회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시기는 시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세액공제에 대하여

외국에서 생긴 소득으로, 그 나라의 소득세나 주민세에 해당되는 세금이 과세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일본은 2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각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지며 동시에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조세조약상 대학생 등 「학생」이나 국내의 체류기간이 「단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 및 시정촌 행정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소득세와 주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소비세 (Shohi-ze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自動車税・軽自動車税

自動車税は、毎年4月1日に自動車を所有している
 場合にかかる税金です。陸運事務所に登録された
 居住地に、都道府県から毎年5月に納税通知書が
 送付されるので、その通知書を使用して納付しま
 す。廃車したときは、速やかに陸運事務所です
 手続きを行わないと課税されますので、注意して
 ください。詳しくは、自動車税事務所に問
 い合わせてください。

軽自動車税は、毎年4月1日にバイク(原動機付
 自動車)及び軽自動車(大型・中型バイクを含む)
 を所有している場合にかかる税金です。居住地
 の市町村から納税通知書が送付されるので、その
 通知書を使用して納付します。詳しくは、居住地
 の市区町村役所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4) 자동차세·경자동차세 (Jidosya-zei · Kei-Jidosya-zei)

자동차세는, 매년 4 월 1 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육운사무소에 등록된
 거주지에, 도도부현에서 매년 5 월에 납세통지서가
 송부되므로, 그 통지서를 사용해서 납부합니다.
 폐차했을 때는 신속히 육운사무소에서 수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경자동차세는, 매년 4 월 1 일에 오토바이(원동기부
 자전거) 및 경자동차(대형·중형 오토바이를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주지
 의 시정촌에서 납세통지서가 송부되므로 그 통지서를
 사용해서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의 시구정촌 행정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